

## 「2022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장학생 하반기 모집 공고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 - 595호

「2022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니,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사명감과 열정을 갖고 계신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및 간호대학(간호학과) 재학생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랍니다.

2022년 8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1. 사업명 : 2022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2. 사업목적

-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갖춘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지원하고, 졸업 후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일정 기간 의무 근무하게 함으로써, 지역 공공보건의료인력 확충 강화

3. 사업 근거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2022년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사업지침 안내 등

4.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전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및 간호대학(간호학과) 재학생
- (지원 인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 10명,  
간호대학(간호학과) 재학생 00명
- (지원 금액)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생 1인당 1,020만 원/학기  
간호대학(간호학과)생 1인당 820만 원/학기

\* 타 장학금 수혜 여부, 학교별 등록금 차이 등과 무관하게 동일 금액 지급 단,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본 제도와 유사한 장학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지원 조건) 장학생 대상 각종 교육 및 멘토링 활동 적극 참여, 졸업 후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만큼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근무(최소 2년~최대 5년)

- 의무복무지역은 장학금을 지원한 해당 광역 지자체\*이고,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에서 의무복무 실시

\* 2022년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참여 시도

공중보건장학의사 :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공중보건장학간호사 :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졸업 후 의사·간호사 면허를 취득하면 바로 의무복무 시작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이 정한 유예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유예 가능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의무복무 유예사유

①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 ②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 ③의료법에 따른 면허자격 정지, ④의료법에 따른 전문의 수련, ⑤의료법에 따른 조산의 수습

- 장학금 수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라도 의무복무기간은 2년 이상  
- 의무복무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기관별 인력수요와 당사자 선호, 지자체 의견 등을 종합하여 결정

- 법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장학금 반환 사유 발생 시에는 지급한 장학금과 법정이자를 반환하며, 의무복무 조건 불이행자는 면허 취소가 가능함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장학금 반환사유

① 퇴학/제적, ② 전과(轉科), ③ 휴학 등에 따른 장학금 정지 후 2년 경과  
④ 의료법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 ⑤ 품행 불량 등으로 장학생 품위 손상  
⑥ 다른 나라 국적이나 영주권 취득 ⑦ 면허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5. 신청 방법

- (신청기한) 2022년 8월 24일(수) 18:00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및 간호대학(간호학과) 행정실 제출분에 한함
-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단계	지원자	의과대학·간호대학	시·도 추천	복지부
준비 서류	1. 장학생 지원서 2. 포트폴리오 3. 성적증명서 4.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	1. 학생 제출서류 2. 장학생 추천서 (학교용) 3. 학생별 추천사유서	1. 학교 제출서류 2. 장학생 추천서 (시도용) 3. 학생별 추천사유서	서류 및 면접 평가  최종 선정

\* 포트폴리오는 자유형식으로 학창시절 활동(600자), 대학 재학 활동 및 계획(300자), 졸업 이후 활동 계획(300자)에 대해 총 1,200자 이내 작성함(공백 제외)

## 6. 선정 방법

- 내·외부 전문가로 선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면접 평가(30점)와 서류 평가(70점)를 실시 → 평가결과를 토대로 복지부에서 최종 선발
- 9월 중, 복지부에서 시·도를 통해 지원자에게 선정 결과 통보

## 7. 문의처 및 온라인 설명회, 홍보영상

- 자세한 내용은 각 의과대학 행정실이나 시·도 담당자 등에게 문의

### <국립중앙의료원 및 시·도 담당자 연락처>

	기관	담당과	전화번호
중앙부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044-202-2534
사무국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02-6362-3733/3732
시·도	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	051-888-3314
	인천광역시	보건의료정책과	032-440-2753
	경기도	공공의료과	031-8008-4783
	강원도	공공의료과	033-249-2394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043-220-3154
	전라북도	보건의료과	063-280-2455
	전라남도	건강증진과	061-286-6021
	경상북도	보건정책과	054-880-3782
	경상남도	감염병관리과	055-211-4996
	제주특별자치도	보건건강위생과	064-710-2913

○ 온라인 설명회 개최 일정 : 8월 10일(수)~8월 21일(일) 중 6회

- 설명회 시간 : 주중(월~금) 오후 5시 00분, 주말(토) 오후 1시 (30분 진행)

\* 온라인 설명회 (ZOOM주소) : <https://us02web.zoom.us/j/86276882217?pwd=bDJNYy93enAzdnFwSTINMHY3eFZoUT09>

< 온라인 설명회 진행 계획(안) >

일자	시간	권역
8/10(수)	17:00-17:30	서울/경기/인천
8/12(금)	17:00-17:30	대구/강원/충북/충남/제주
8/17(수)	17:00-17:30	부산/울산/경북/경남
8/19(금)	17:00-17:30	광주/대전/전북/전남
8/20(토), 8/21(일)	13:00-13:30	전체

○ 유튜브 홍보영상 : <https://youtu.be/dmhdEZZUEqU>

[참고 1] 2022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신청 서류

[참고 2] 2022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진행 절차







## 참고 2

## 「2022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진행 절차

구분	주체	사업절차	의무
장학생 신청 및 선발	지원자	장학생 지원	지원서·포트폴리오 작성 후 성적증명서·고등학교 졸업증명서(①)와 함께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및 간호대학(간호학과) 제출
	의과대학장(의학전문대학원장) 및 간호대학장(간호학과장)	장학생 추천	학교용 추천서 및 추천사유서 작성하여 ① 서류와 함께 시·도 제출
	시·도지사	장학생 신청	시·도용 추천서 작성하여 ① 서류와 함께 보건복지부 제출
	보건복지부 및 국립중앙의료원	장학생 선발 및 결과 통보	선발위원회 개최 후 결과 통보
	장학생	장학금 지급 신청	지급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②) 작성하여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및 간호대학(간호학과) 제출
	시·도지사	장학금 교부 신청	교부신청서 및 서약서 작성하여 ② 서류와 함께 보건복지부 제출
	보건복지부 및 시·도지사	장학금 교부	서류 검토 후 장학금 지급
재학 중	보건복지부 및 국립중앙의료원	비정규 교육 및 멘토링 체계 운영	계획 수립 및 운영
	장학생	비정규 교육 및 멘토링 체계 참여	필수 참여
	의과대학장(의학전문대학원장) 및 간호대학장(간호학과장)	장학생 학사관리	해당 학기 중 장학생의 학적이 변동될 경우 지체 없이 시·도에 보고
	시·도지사	장학생 학사관리	매 학기가 끝날 때마다 학사관리 보고서 작성하여 보건복지부 제출
		정산보고	2월 이내에 정산보고서 작성하여 보건복지부 제출
졸업 후	장학생	수련 과정 포함 의무복무 유예 시	매년 조건이행 유예사유 발생보고서(③) 작성하여 시·도 제출
	시·도지사	장학생 관리	매년 ③ 서류 보건복지부 제출
	보건복지부 및 국립중앙의료원	장학생 배치	운영위원회를 통한 장학생 의무복무 기관 배치
	장학생	의무복무 수행	배치된 기관에서 의무복무 수행

시·도 및 국립중앙의료원은 모든 과정에서 장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장학생은 연락처 변경 시 반드시 시·도 및 국립중앙의료원에 고지